

대법원 2017. 4. 13 선고 2016다27563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7. 4. 13 선고 2016다275631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6. 11. 25 선고 2016나53530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순천시

판결 선고2017. 4. 13.

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6나5353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

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 김창석

대법관 조희대

주심대법관 박상옥